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 등에 관한 법률안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71

발의연월일: 2024. 12. 10.

발 의 자:허성무·박홍근·조계원

박해철 • 채현일 • 박용갑

박선원 · 김교흥 · 김동아

권향엽 · 정혜경 · 이강일

송재봉 • 이재관 • 한정애

유종오 의원(16인)

제안이유

매년 6만여 건 내외로 실종성인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인의 실종 신고에 대해 경찰은 '가출인'으로 분류하여 소재파악이나수사, 범죄 관련 여부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체계적인 수사와 적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실종성인, 실종성인으로 추정되는 변사체, 신원불상변사자 등의 유전자 검사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원확인을 통해 이들을 가족과 친지 품으로 돌려보내는데 제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와 수색·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실종성인, 신원불상변사자 등의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 실시 근 거를 마련함으로써 성인의 실종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 록 함으로써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발견 및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함(안 제1조).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을 원활히 수행되도록 상호 협력 및 지원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은 실종성인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 실종성인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경찰청장이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경찰청장은 해수면에서 발생한 실종성인의 신고 및 발견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공동대응·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함(안 제6조).
- 마.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피신고인이 실종성인인지 또는 특정 실종성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경우 실종성인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 바. 경찰관서의 장이 변사자 또는 변사로 의심되는 시체를 발견하고 신고를 받았을 경우 변사자의 신원 확인, 범죄 관련 여부 등을 확 인하기 위하여 현장 탐문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신원

- 이 확인되지 아니한 신원불상변사자에 대하여 검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경찰청장은 신원불상변사자의 조속한 신원확인을 위 하여 법의학적 특징, 유품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 하도록 함(안 제11조).
- 사. 경찰청장은 신원불상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유전자검사시료를 채취할 수 있고, 유전자검사 업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및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음(안 제12조 및 제13조).
- 아. 불상자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신원불상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회보할 수 있고 실종아동 및 수형자 등의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 등과 연계하여 검색할 수 있음(안 제1 5조 및 제16조).
- 자. 경찰청장은 특정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에게 개인위치정보등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동경로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 차. 경찰관서의 장은 특정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소 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소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 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 카.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발견과 그 신원확인을 위하여 실종성인과

실종성인을 찾고자 하는 가족 및 친지, 실종성인으로 추정되는 변사체 또는 변사체의 일부, 실종성인과 관련된 물건 또는 장소 등으로부터 검사대상물을 채취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하. 경찰청장이 실종성인을 발견한 때에는 발견된 실종성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인 또는 그 가족에게 통보하고, 발견된 실종성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그 가족에게 실종성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9조).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발견 및 복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성인의 신속한 수색과 발견을 도모하고 생명·신체 및 사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실종성인"이란 소재 또는 행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에 처하였을 우려가 있어 소재 또는 행방을 확인하고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실종 당시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 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 나.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 다. 「형사소송법」 등 형사 관계 법령에 따라 명백하게 체포·구속·구인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피의자로 지명수배 중인 사람

- 2) 「군형법」에 따른 군무 이탈로 지명수배 중인 사람
- 3)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소재가 불명하여 지명수배 중인 사람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2. "특정 실종성인"이란 실종성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자살의 의사 또는 계획을 표시하는 등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
 - 나. 실종 당시 실종성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긴급한 의료적 치료 또는 의약품 투여가 필요한 경우 등 조속한 발견이 요구 되는 사람
 - 다. 그 밖에 신고내용 및 실종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하여 실종성인 의 생명·신체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어 조속한 발견이 요구 되는 사람
- 3. "신원불상변사자"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변사자 또는 변사체의 일부를 말한다.
- 4. "디엔에이"란 생물의 생명현상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화학물질인 디옥시리보 핵산(Deoxyribonucleic acid, DNA)을 말한다.
- 5. "유전자검사시료"란 사람의 혈액, 타액, 모발, 구강점막 등 유전자 검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 6.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

된 것을 말한다.

- 7.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란 이 법에 따라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체계적으로 수록한 집합체로서 개별적으로 그 정보에 접근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 8. "유전자검사"란 개인 식별(識別)을 목적으로 혈액·머리카락·침 등의 검사대상물로부터 유전자를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 9. "유전정보"란 유전자검사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말한다.
- 10. "신상정보"란 이름·나이·사진 등 특정인(特定人)임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관련 정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②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 1. 실종성인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 2. 실종성인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연구
 - 3. 실종성인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교육 및 홍보
 - 4.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발견 체계의 구축 및 운영
 - 5. 실종성인에 대한 수색・발견 관련 기술 개발 및 장비의 보급
 - 6. 실종성인에 대한 발견 과정에서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대책
 - 7. 그 밖에 실종성인의 수색ㆍ발견 등에 필요한 사항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실종성인의 신고·수색·발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 제5조(실종성인 신고·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경찰 청장은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 야 한다.
 - ②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업무 관련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이 보유한 실종성인의 신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업무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한 신상정보의 범위, 신상정보 확인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공동대응·협력 및 협조) ① 경찰청장은 해수면에서 발생한 실 종성인의 신고 및 발견에 있어 해양경찰청 등 다른 기관과의 공동

대응 또는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대응·협력 요청, 협조 요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실종성인의 신고 및 조치

- 제7조(신고 접수) ①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관할과 관계없이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해당 신고사건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취하거나 그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1.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및 인상착의 등 신상정보
 - 2. 피신고인의 소재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일시·장소 및 경위
 - 3. 피신고인이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험에 처하였을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4. 그 밖에 피신고인의 실종성인 또는 특정 실종성인 해당 여부 판단과 발견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신고에 대한 조치) ① 경찰관서의 장은 피신고인이 실종성인 또는 특정 실종성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신고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 조회, 주변인물 등으로부터의 진술 청취 및 현장 탐문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있다.
 - ②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통해 알게 된 사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인으로부터 확인한 내용 등을 토대로 피신고인이 실종성인 또는 특정 실종성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경찰관서의 장은 피신고인이 실종성인 또는 특정 실종성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실종성인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9조(실종성인 등록의 제한)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 신고의 오용 및 남용을 방지하고, 피신고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신고인을 실종성인으로 등록하 지 아니할 수 있다.
 - 1. 신고인의 신고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2. 신고인이 채권추심 등 부당한 목적으로 실종성인 신고를 한 것으

로 판단되는 경우

- 3. 피신고인이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에 처하였을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피신고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복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21조제 2항에 따라 신고인에 대한 피신고인의 소재 확인 내용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실종성인정보시스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5. 신고인이 피신고인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해행위 또는 범죄에 관한 이력이 있는 경우
- 6. 다른 행정기관에서 행정조사 또는 조세·복지·보건 등 소관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당사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종성인 신고를 한 경우
- 7. 그 밖에 실종성인의 등록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제10조(부당신고 및 허위신고의 금지) 누구든지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을 위한 것이 아닌 채권추심 등 부당한 목적이나 허위의 내용 으로 실종성인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신원불상변사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제11조(신고 접수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변사자 또는 변사로 의심되

- 는 시체를 발견하거나 시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변사자의 신원 확인, 범죄 관련 여부나 신 고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탐문조사 등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다.
- ②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 후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신원불상변사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따른 검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 야 한다.
- ③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탐문 조사 및 제2항에 따른 검시 등을 통해 밝혀진 신원불상변사자 유해의 법의학적 특징, 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 신원불상변사자의 신원확인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유전자검사시료의 채취) ① 경찰청장은 신원불상변사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변사자로부터 유전자검사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 ② 경찰청장은 채취한 유전자검사시료가 부패 또는 오염되거나 다른 유전자검사시료와 바뀌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취,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데이터베이스의 사무관장) ① 경찰청장은 신원불상변사자의 유전자검사 및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원불상변사자의 유전자검사 및 데이

터베이스의 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불상자신원확인정보담당자"라 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1. 제12조에 따라 채취한 유전자검사시료의 검사 및 데이터베이스에 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 2.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 3. 제14조에 따른 유전자검사시료의 보관
- ③ 제2항에 따른 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 유전자검사업무,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및 유전자검사시료의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유전자검사시료의 보관) 불상자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한 이후에는 제12조에 따라 채 취한 유전자검사시료를 훼손·부패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 제15조(데이터베이스의 연계) ① 불상자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신원불 상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이 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각각의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검색할 수 있다.
 - ② 불상자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신원불상변사자의 신원확인과 관계 없는 다른 범죄의 수사 또는 형사재판에서의 사실조회 등 다른 목 적으로 이 법에 의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가 연계 검색되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데이터베이스의 연계 검색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회보) ① 불상자신원확인정보담 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디엔에이신원확 인정보를 검색하거나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 1.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록하는 경우
 - 2. 실종 사건 또는 가출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해당 실종 또는 가출의 원인이 된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② 불상자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결과를 회보할 때에는 그 용도, 작성자, 조회자의 성명 및 작성 일시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③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및 검색결과의 회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① 불상자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변사자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구축된 데이터베 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 ②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한 경우에 불상자신원확인정보담당 자는 삭제 사유 및 일시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18조(업무목적 외 사용 등의 금지) 불상자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업

무상 취득한 유전자검사시료 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한 활동

- 제19조(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한 활동)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1. 주거지, 최종 목격된 장소 또는 실종성인이 소재하고 있다고 추 정되는 장소에의 탐문 조사
 - 2. 신고인 · 목격자 또는 실종성인 주변인물의 진술 청취
 - 3. 실종성인의 소재 및 이동경로 확인에 필요한 정보의 조회
 - 4. 경찰견 드론 헬기 등 발견에 필요한 장비를 활용한 수색
 - 5. 그 밖에 경찰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제20조(특정 실종성인 발견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등의 제공 요청) ① 경찰관서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특정 실종성인의 소재 또는 행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특정 실종성인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 마목·사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이하 "개인위치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공자
-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가입수 단 제공기관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그 특정 실종성인의 동의 없이 개인 위치정보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특정 실종성인의 동의가 없음을 이 유로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그 사실을 해당 정보주체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통지가 실종성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경찰관서의 장과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특정 실종성인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

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절차, 제 3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절차 및 제4항에 따른 파기 방법·절차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특정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한 이동경로정보의 제공 요청) ① 경찰관서의 장은 특정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법인·단체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개인에 대하여 특정 실종성인의 이동경로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정보(이하 "이동경로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카드 사용명세
 -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 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의 사용일시, 사용장소
 - ② 경찰관서의 장과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특정 실종성인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이동경로정보를 목적 외

- 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 ③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다음 각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1. 특정 실종성인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 2. 수집된 정보는 이 법에 따른 특정 실종성인 발견 업무 이외의 목 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 실
- ④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이동경로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수집된 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 ⑤ 제1항에 따른 이동경로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파기 방법, 제3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한 출입·조사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의 장 및 종사자, 실종성인의 주소·거소 및 실종성인이 있다고 의심되는 장소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 실종성인의 고용주 및 그 밖에 실종성인과 관계있는 사람(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 ②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 실종성인의 주소·거소, 실종성인이 있다고 의심되는 장소 또는 실종성인의 고용장소(이하 "관계장소"라한다)에 출입하여 관계인이나 실종성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③ 경찰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출입·조사 또는 질문을 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종성인의 가족 등을 동반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출입·조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 등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조 사 또는 질문을 할 때에는 해당 관계장소의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서 소속 공무원이 제2항에 따라 출입·조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때에 관계장소에 관계인이 없거나 관계인이 경찰관서 소속 공무원의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이웃,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을 참여하게 하여 출입·조사 또는 질문할 수 있다.
- ⑥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경찰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제23조(유전자검사의 실시) ①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발견과 그 신원 확인을 위하여 실종성인과 그 실종성인을 찾고자 하는 가족 및 친지 등이나 실종성인으로 추정되는 변사체 또는 변사체의 일부, 실종성인과 관련된 물건 또는 장소 등으로부터 유전자검사를 위한 대상물(이하 "검사대상물"이라 한다)을 채취할 수 있다.
 - ② 경찰청장은 유전자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③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검사 대상이 되는 실종성인과 그 가족 또는 친지 등의 신상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채취와 제2항에 따른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려면 미리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종성인인지 여 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⑤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채취와 제3항에 따른 신 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을 하려는 경우에 미리 검사대상자 나 검사대상물 채취와 관련된 물건 또는 장소 등의 소유자·점유자 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⑥ 경찰청장은 제5항에 따른 서면동의를 받는 경우 그 대상자가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일 때에는 본인 및 법정대리인

-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심신상실, 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전정보·신상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유전정보는 검사기관의 장이, 신상정보는 경찰청장이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종류·채취 방법, 유전자검사의 실시,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전자검사의 동의 및 유전정보와 신상정보의 구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데이터베이스의 연계) ①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신속한 소재 발견 및 그 신원 확인을 위하여 정보 등의 공유가 필요한 경우 관 계 기관의 장에게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신 상정보 데이터베이스와 해당 기관에서 보유한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연계를 요청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연계 기준·방법 및 절차, 연계 정보의 범위 및 연계 정보의 보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① 누구든지 실종성인의 발견과 그 신원확인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제15조에 따른 검사대상물 채취나 유전자검사 실시 또는 이와 관련된 유전정보를 이용할수 없다.
 - ② 검사대상물의 채취, 유전자검사 또는 유전정보의 관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채취한 검사대상물 또는 유전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① 검사기관의 장은 유전자검 사를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대상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 ②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유전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 1. 실종성인의 소재를 확인하였을 때
 - 2. 검사대상자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때
 - ③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대상물・유전정보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④ 검사대상물·유전정보 폐기의 절차·방법, 기록 및 보관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유전자검사 기록의 열람 등) ①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대상자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에 관한 신청 절차

및 서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신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 종성인과 그 가족 및 친지 등의 신상정보를 실종성인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6장 실종성인 발견 시의 조치

- 제29조(실종성인 발견 시 조치)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제7조에 따른 피신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같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실종성인에게 실종신고가 되어 있음을 고지하고, 해당 실종성인에게 복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여 그의 동의를 받아신고인 또는 그 가족에게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을 통보할수 있다.
 - ② 누구든지 발견된 실종성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그 가족에게 실종성인을 발견하였다는 사실 외에 해당 실종성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③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이 심신미약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동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복귀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④ 경찰관서의 장은 발견된 실종성인이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실종성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장에게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통보 대상이 되는 정보의 내용 및 범위, 동의 및 통보에 관한 절차·방법과 제3항에 따른 복귀 절차·방법, 제4항에 따른 협력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실종성인 등록 해제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 또는 특정 실종성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실종성인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사항을 해제하여야 한다.
 - 1. 실종성인 또는 특정 실종성인이 발견되거나 소재가 확인되어 복 귀하는 등 해당 실종사건이 종결된 경우
 - 2. 실종성인 또는 특정 실종성인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3.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 인된 경우
 - 4. 실종성인 또는 특정 실종성인의 발견활동의 개시 이후 제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종성인 또는 특정 실종성인에 대한 발견활동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실종성인 또는 특정 실종성인의 등록 사항을 해제하는 때에 경찰관서의 장은 해당 실종성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나 제29조제1항에 따라 신고인에 대한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의 통보를 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관련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종성인정보시스템에 기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불상자신원확인정보담당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 제3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등을 특정 실종성인을 찾기 위한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적 달성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파기하기 아니한 자
 -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동경로정보를 특정 실종성인을 찾기 위한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적 달성 후 정당한 사유없이 파기하지 아니한 자
 - 3. 제28조를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2조에 따라 채취한 유전자검사시료를 유전자검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멸, 은닉 또는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
- 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거짓으로 작성·수록하거나 변개(變改) 한 자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2항 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유전자검 사시료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한 자
-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를 위반하여 변사자의 신원이 확인된 디 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한 자
- 5. 제18조를 위반하여 유전자검사시료 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
- 6.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을 행사하여 제22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7.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검사대상물의 채취 또 는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유전정보를 이용한 자
- 8.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채취한 검사대상물 또는 유전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자
- 9.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발견된 실종성인의 동의 없이 실종성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등 정보를 실종신고를 한 자에게 알려준 자

- 제33조(과태료) ① 제10조를 위반하여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을 위한 것이 아닌 부당한 목적이나 허위의 내용으로 실종신고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0조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등 제공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제공한 자
 -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동경로정보 제공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 유 없이 정보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제공한 자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